

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

제정 2009. 1. 7 조례 제1639호
일부개정 2017. 3. 12 조례 제2242호(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국가와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3. 12>

1. “직무발명”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.
2. “개인발명”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.
3. “발명자”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.
4. “시유특허권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.
5. “처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
 - 나. 시유 특허권에 대한 「특허법」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
 - 다.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
6. “처분수입금”이란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.

제3조(직무발명의 시승계) ① 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. 다만,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을 승계한다.

제4조(발명자에 대한 보상) 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업무의 관장)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시유 특허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7. 3. 12>

1.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
2.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에 대한 승계 사항
3.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·보상에 관한 사항
4. 시유 특허권의 처분·관리에 관한 사항

제6조(발명의 신고)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승계의 결정)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권리의 양도)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.

제9조(출원)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발명자의 특허출원)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시의 결정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

수 없다. 다만,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등록보상금) ① 시장은 시유평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특허권 100만원
2. 실용신안권 50만원
3. 디자인권 30만원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제12조(처분보상금) ① 시장은 시유평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유평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3조(보상금의 지급) ① 제11조 또는 제12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.

③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.

제14조(직무발명의 장려)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필요한 실험·실습·연구·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15조(보상금의 반환)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

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

제17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7. 3. 12>

1.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
2. 제7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
3. 제18조에 따른 개인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
4. 시유특허권의 관리·처분 및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8조(개인발명의 승계)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7. 3. 12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,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.

[제목개정 2017. 3. 12]

제19조(발명자의 의무)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실시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
제20조(비밀유지)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제21조(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)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7. 3. 12 조례 제2242호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
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